

제조물책임보험

PL대책의 출발점은 안전하고 사고 없는 제품 만듦에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 방호 시스템이나 긴급정지장치를 제품본체에 장치하거나 제조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지시나 경고에 의해 사용자에게 제품의 바른 사용방법, 안전한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한번 제품의 결함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에는 손해배상금, 변호사보수, 소송비용이나 증거작성비용 등의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PL대책 중 'PL보험'은 기업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회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수단의 하나이다.

PL보험은 제품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제조 또는 판매한 제품의 결함에 따라 보험기간 중에 타인의 생명, 신체에 해를 끼치거나 재물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해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여기서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재판에 의해 최종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상의 화해나 넓게는 재판이외의 화해에 의한 해결의 경우를 포함하는 취지이다.

1 기본적인 내용

(1) 보험의 대상으로 되는 제품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설계도, 특허, 노하우 등 제품의 형태를 가지지 않은 단순한 기술 공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에 앞서서 피보험자가 제조 또는 판매하고 있는 모든 제품을 일괄하여 보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한 제품만을 보험의 대상을 삼는 것도 가

능하다.

(2)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계약자는 보험에서 보상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일정한 보험 조건으로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로서 대부분의 경우 피보험자를 가리킨다.

완성품 제조업자와 부품, 원재료 제조업체는 물론,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수입업자도 모두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이들 사업자는 각각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완성품 제조업자와 관련된 부품, 원재료 제조업자 또는 하청업자 등과 같이 대상 제품의 유통에 관여하는 자는 복수로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복수 회사가 1개의 보험을 공유하게 되므로 보전 한도액의 설정 등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와 일반 피보험자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보험 계약상 혹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만 해당되며 후자는 보험 계약상 혹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뿐 아니라 동 피보험자의 피고용인 및 업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의 대리인 또는 사업 감독자도 포함된다.

(3) 보험 사고와 보험기간

보험 사고란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생기고 보험 회사의 보상 책임을 구체화시키는 것을 말하며, 제품이 언제 제조 또는 판매된 것인가에 무관하게 제품이 원인이 되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장애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해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을 부담할 때 유효한 보험 계약에 의해 보험금을 지불하는 사고 발생 기준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 발생 시기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도 있으므로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것을 보험 사고로 하는 배상 청구 기준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 기간은 통상 1년간이며 보험 계약이 매년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4) 보상되는 손해의 범위

PL보험에 의해 보상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할 배상금, 소송, 화해 등에 소요되는 정의 소송비용,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보전 및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다.

(5) 보상되지 않는 손해

- ①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위반에 기인된 배상 책임
- ② 전쟁, 폭동, 테러, 천재지변, 원자핵 물질의 방사성, 환경오염, 소음, 전자파, 전자장 등에 의한 배상 책임
- ③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 ④ 계약상 기중 책임과 사용자 배상 책임
- ⑤ 피보험자의 보호, 관리, 통제하에 있는 재물에 기인된 배상 책임
- ⑥ 결합 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사용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
- ⑦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 ⑧ 유체물의 사용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 재물이입은 사용 손실은 보상
- ⑨ 제품 제조 당시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결합이 있는 것으로 판명할 수 없는 것에 기인한 배상 책임
- ⑩ 생산물 및 구성요소 고유의 흠, 마모 등의 품질저하에 기인된 배상 책임
- ⑪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에 기인된 배상 책임

(6) 보험료 산정 방법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보험 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제조 또는 판매하는 생산물의 매상고에 보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보험 계약 체결 시 예상 매상고에 따른 잠정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 기간 종료 후 실제 매상고에 근거하여 산출한 확정 보험료와의 과부족을 정산한다.

2 각국의 PL보험 실태

미국의 많은 기업은 PL보험을 일부 포함시킨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충분한 보상 한도액을 확보하기 위해 초과손해포괄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배상보험 등의 초과손해를 담보하고 있다. 또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포함되는 형태가 아닌 단독의 PL보험도 존재하며 징벌적 손해 배상이 채용되고 있는 점만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해외 PL보험과 동일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일본의 PL보험은 우리나라와 같이 국내 판매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과 해외 수출품 대상으로 하는 '해외 PL보험' 또는 '수출 PL보험' 이 있으며 그 내용은 우리나라와 거의 동일한 형태이다. 또한 유럽의 경우에는 각국 공통의 통일적인 약관은 없으며 동일 국가 내에서도 보험 회사마다 각각 다른 약관을 사용하고 있거나 'PL보험' 이라는 단독 보험이 없는 나라도 있는 등 여러 가지 특성이 있다. 